

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 례 (안) 심사보고서

94. 3. 18

조례정비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우승기 내무위원장의 11인
- 나. 제출일자 : 93. 12. 7
- 다. 회부일자 : 93. 12. 23
- 라. 상정일자 : 94. 3. 18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소송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 특별포상금 지급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소송업무 수행에 승소한 자에게 특별포상금 지급이 불명확하게 혼동이 야기됨으로 본 조문에 포상금 문안을 삽입코자 함(제5조 제2항)

3. 전문위원 설명요지

소송업무 수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포상금 지급조문을 명확히하여 혼동을 없애는 내용임.

4. 토론요지

없음.

5. 수정안요지

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반대 : 없음.

7. 첨부 :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1부

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“지급액의 6배”를 “포상금 지급액의 6배”로 한다.

부 칙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 5 조(포상금지급액) ① (생략)	제 5 조(포상금지급액) ① (현행과 같음)	제 5 조(포상금지급액) ① (현행과 같음)	②	②
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<u>지급액의 6배</u> 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	②	② <u>포상금지급액의 6배</u>